

LP가스 사고예방을 위한 LP가스 호스사용주택 금속배관 교체 안내

“**고무호스**는 노후·파손·이탈 등으로 사고발생 우려가 있어
안전한 **금속배관**으로 교체·설치하여야 합니다.”



관련규정

「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」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부칙146호 제8조 제1항
[LPG 사용시설 중 압력조정기에서 중간밸브까지 LP가스 호스가 설치된 시설을 금속배관으로
설치하도록 의무화]

모든 LP가스 호스사용 주택은 금속배관으로 교체·설치하여야 합니다.

다만,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서민층 가구는 정부에서 교체를 지원해 드립니다.

- 지원대상 :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소외계층

*소외계층이란? 독거노인, 중증장애인, 소년소녀가장, 기초연금수급자, 한부모가정

- 문의처 : 시·군·구 가스담당부서,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역본부(지사)



산업통상자원부

지방자치단체



한국가스안전공사